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 월 3 일

여 수 시 장 권 으 경



여수시 조례 제1692호

붙임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로, “이내로 하여야”를 “이내로”로 한다.

제6조 중 “규칙이 정하는 바”를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관거의”를 “하수관로의”로, “하수관거상태”를 “하수관로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를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시티브이”를 “폐쇄 회로 텔레비전”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을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를 “범위에서 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용도변경”을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로, “시 부과하는”을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에 따른 허가를 받아”를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로 한다.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타행위””를 “타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하수도법」(법률 17852호, 2021. 1. 5. 공포)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관종	PVC관, PE관, 흠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연장	m <input type="text"/>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input type="text"/> m ³ /일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KS 및 이에 준하는 인증제품 사용여부)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수수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u>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u>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u>이내로 하여야</u> 한다.</p> <p>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규칙이 정하는 바에</u>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7조(<u>하수관거 준설 등</u>) ① 시장은 <u>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u> ② <u>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u></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 --- <u>지정할 수 있는 범위</u>----- ----- ----- <u>이내로</u> - -----.</p> <p>제6조(일시사용 신고) ----- ----- ----- ----- <u>「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u>----- --.</p> <p>제7조(<u>하수관로 준설 등</u>) ① ----- -- <u>하수관로의</u> ----- ----- <u>하수관로 상태</u>----- --. ② <u>하수관로</u>----- ----- ----- ----- -----</p>

<p>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u>규칙이 정하는 바</u>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u>배수설비 설치의무자</u>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u>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u>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u>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u>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p>		<p>----- -----.</p> <p>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 ----- ----- ----- <u>규칙</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 <u>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u>----- ----- <u>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u>----- ----- -----. -- 「건축법」 제22조제1항 -- ----- ----- <u>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	--	---

자에게 연락,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서 신설>

2. · 3. (생략)

4. 오수발생량 $1m^3$ /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 폐쇄 회로 텔레비전-----

-----.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1.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

4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생 략)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의

----- 법위
에서 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
-----.

5. (현행과 같음)

6. -----

----.

가. -----

----- 용도변경, 폐수배출
시설 설치, 변경설치 -----
----- 시 개산액을 통
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
하여 부과하는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 ③ (생략)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납부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사비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삭 제>

(3) ----- 제1항-----
-----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타행위-----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 설>

한다.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
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